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71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주호영·김승수·김예지

이헌승 • 신성범 • 김기웅

고동진 · 성일종 · 이달희

김종양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'비상자동제동장치'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.

이에 자동차 제작·조립·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

여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4(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차종, 용도,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제동장치(이하 "비상자동제동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하여야 한다.

②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(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4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9조의4(비상자동제동장치의
	<u>장착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</u>
	등은 차종, 용도, 승차인원 등
	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
	에 따른 자동차에 전방충돌이
	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
	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제
	동장치(이하 "비상자동제동장
	치"라 한다)를 장착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기
	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
	부렁으로 정한다.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4의2.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
	자동차제작・판매자등(판매위
	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
5. ~ 19. (생 략)	5. ~ 19. (현행과 같음)